정책건의

기업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024. 3. 19.

FKI 한국경제인협회

목 차

Ⅰ. 폐지

1. 광물 수입 · 판매 부과금 폐지 ····· 1

Ⅱ. 요율개선 등

2. 수입·생산 LPG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 2
3. 국내 수소제조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또는 환급 ····· 3
4. 해외자원개발 통한 LNG 수입부과금 면제 ····· 5
5.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 6
6.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 8
7.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 · 요율 조정 ····· 10

Ⅲ. 감면대상 개선

8.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 12
9. ‘석유화학공업용’ LNG 수입부과금 환급 ····· 14
10. ‘직접 소비’ LNG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 16
11.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 18
12. 윤활기유 제조 원료 수입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 ····· 20
13. 물이용부담금 감면 ····· 22
14. 방제분담금 부과 대상 축소 ····· 24

Ⅳ. 산정방식 개선

15.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조정범위 축소 ····· 26
16.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개선 ····· 28
17. 중복규제에 따른 대기 배출 적용 기준 완화 ·····30
18. 장애인 고용부담금 업종별 적용 ·····34

1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폐지

1. 현황

□ ①광물 수급, ②가격 안정, ③광업법 제8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 수입자 및 판매자에게 부과금 징수

* 관련 법령 : 광업법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광업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유통·비축 사업, 광산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 등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문제점

□ 부과 기준도 없고, 부과금 실적도 없음

○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에 필요한 기준(대상·부과율)을 담은 시행령이 없고, 따라서 법제정('94년) 이후 부과금 징수 실적도 전무

□ 광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수입 광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될 경우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제조원가 상승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입법 취지와 불일치

○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광업법의 입법취지에 배치

3. 개선방안

□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폐지

2 수입·생산 LPG 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1. 현황

□ 수입 LPG와 생산 LPG 간 수입부과금 차별 부과

○ 석유정제업자가 수입한 원유에서 생산한 LPG에는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반면, LPG 수입업자가 수입한 LPG에는 부과금을 면제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별표3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2. 문제점

□ 석유정제산업 경쟁력 저하

○ LPG 수입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석유정제산업에 차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석유정제산업의 경쟁력이 위축

* 국내 LPG시장은 LPG수입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확보(시장점유율 70% 이상)

- 국내 생산 LPG에 부과금 환급 시 정유업계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수입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 LPG를 직수입하는지 아니면 원유 수입 후 생산하는지에 따라 부과금 부과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는 것

- 부과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개인·법인에게 세금으로 작용

3. 개선방안

□ 국내 생산LPG에 대해서도 수입부과금 환급

3 국내 수소제조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또는 환급

1. 현황

□ 수소제조용 LNG의 소비세율(세금)은 인하, 수입부과금(부담금) 요율은 유지

○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율을 용도에 상관없이 8.4원/kg으로 인하('22.4.1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추이>

<기존>		<'22.4.1일~>
발전용 연료전지 8.4원/kg 차량 충전 등 42원/kg	→	용도에 상관없이 8.4원/kg

○ 수소제조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기존 요율(24.2원/kg) 유지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1, 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별표3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2. 문제점

□ 부과금 요율이 세율보다 높아 조세 체계 왜곡

○ 수소제조용 LNG 개별소비세(세금) 세율은 8.4원/kg이나, 부과금(부담금) 요율은 24.2원/kg으로 부과금 요율이 세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음

○ 정부는 '19년 발전용 연료 조세 합리화를 위해 발전용 LNG 세율과 수입부과금 요율을 동시 인하하여* 조세 및 부담금 정책 일관성을 유지

* 발전용 LNG 세율 및 수입부과금 요율 인하('19년) : ① 개별소비세(60원/kg → 12원/kg), ② 수입부과금(24.2원/kg → 3.8원/kg)

< LNG 용도별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24.2 기준) >

	발전용		산업용		그밖의 용도 (도시가스 등)
	일반	열병합	연료용	수소제조용	
개별소비세(원/kg)	12	8.4	42	8.4	42
수입부과금(원/kg)	3.8	0(환급)	24.2	24.2	24.2

□ 수소산업 경쟁력 위축

○ 수소제조용 LNG에 대한 과도한 수입부과금으로 인해 국내 생산 수소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소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

- 국내에서 수소생산에 사용된 천연가스(LNG)에는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는 반면 해외에서 수소 생산 시 사용된 LNG에는 부과금 부과 없음

○ 과도한 부과금은 정부의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과 배치

-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함(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22.11월)

-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 대 보급, 액체수소충전소 70개소 구축, 20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를 목표

3. 개선방안

□ 수소제조용 LNG의 수입부과금 요율 인하 또는 환급

4 해외자원개발 통한 LNG 수입부과금 면제

1. 현황

□ 석유제품 수입·판매에 부과금 징수

○ 석유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 정제·수출입업자에게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별표3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2. 문제점

□ 부과금 징수 취지에 위배

○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LNG는 석유 관련 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킴에도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함

-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에 중요*한 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22년 대한민국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4.3%, 에너지 수입액은 약 288조 2,274억원으로 연수입액의 약 30% 차지(석유, 천연가스(LNG), 유연탄은 전량 수입)

□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배치

○ 정부는 법률(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지원, 이에 대한 부과금은 정책 취지에 반함

3. 개선방안

□ 해외자원개발 통한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5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1. 현황

□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 징수

○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01년 부터 운영)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 3.13%('01년)→4.59%('02～'05년)→3.7%('06년～)
* 부담금 규모: 1.38조('10)→1.99조('15)→2.01조('20)→2.08조('22)→3.2조('24목표)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51조 / 동법 시행령 제36조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2. 문제점

□ 기금 적립액 대비 부담금 과다

○ 최근 5년간('18년～'22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평균 잉여 재원은 약 5.2조원이고, '24년에는 7조원 이상 적립될 것으로 전망

* '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 목표액(산업부) ☞ 3조 2,028억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내 부담금 징수액 순위 1위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부담금 징수 규모도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준

* '23년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 총 90개 부담금 중 1위 규모

* '24년도 정부부처별(18개) 부담금 징수 계획 상, 산업부가 가장 많은 6조 2,662억원으로 전체 징수계획의 25.5%를 차지

○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수차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 과다 문제를 지적

- 산업부는 요율인하 검토가 아닌 지출확대만으로 여유자금 누적 해소

□ 과다한 기금에 따른 지출 문제 발생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대규모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적발*되는 등 과다 누적된 기금재원을 부실하게 지출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23.7)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에서 '22.9에 진행된 1차 점검*에 이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 적발

* 1차 점검 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적발

○ 기금을 취지에 맞지 않는 버섯·곤충사육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과도하게 사용한 반면 부당지원금 환수율은 3%에 불과*

-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으로 각각 1조 3,118억원, 2,000억원 사용(전출), 공자기금에 1조 1,800억원 예탁('22년 기준)

* 자료 : '23.6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

** 기금 설립취지 :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

3. 개선방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 부담금 요율을 3.0%로 낮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전국민의 부담은 6,140억원(19.2%) 감소한 2조 5,888억원으로 경감될 전망 (1년 기준)

○ 부담금의 국민부담은 부담금 요율을 2.5%로 낮출 경우 2조 1,573억원, 2.0%로 낮출 경우 1조 7,259억원으로 경감될 전망 (1년 기준)

□ 전력기금 개선 로드맵을 마련

6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1. 현황

□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 지자체장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목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

*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분양가x0.8%
* 관련 법령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5조의2/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소관 부처 : 교육부

2. 문제점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부과 취지 약화

○ 출산율 저하로 입학 예정자수는 '09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담금 요율은 0.8%로 동결되어 부담금과 사회적 변화 간 불일치

- '21년 징수액 4,477억 중 902억원을 지출(학교용지 매입)하여 지출이 징수액의 20.1% 수준(기재부, 2021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22.5월)

* 수입항목에서 일반회계전입금, 지출항목에서 시군구 교부금 불포함

- 개발지역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 감소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례적 부과와 뒤늦은 확인으로 잦은 소송 발생

3. 개선방안

□ 부담금 폐지 또는 부과요율 하향 조정

- ㅇ 시대적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부담금 산출을 위한 적용 요율을 완화
- ㅇ 지자체의 연령별 인구구조에 따라 지역별 부과 기준을 차등화하고, 개선논의 기간 중이라도 수도권 지역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

7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요율 조정

1. 현황

□ 가계대출 취급 금융사에 서민금융 출연금 부과

○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全금융회사*에 매월 월중 가계대출** 평균잔액의 출연요율(0.03%) 금액을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부과 (서민금융진흥원)

*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

** 他부담금 중복,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 예외 인정 : 중금리 대출, 보험약관 대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등

○ 금융위는 '19년 서민금융 관련 출연금 예산(2,2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全금융회사 대상으로 서민금융 출연제도 시행을 확정('21.10월 시행)

* 제도 취지 :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함

* 관련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동법 시행령 제42조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2. 문제점

□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부과

○ 여신전문금융사는 인·허가가 아닌 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금융사가 많아 출연금을 납부하기에 부담 존재

- 등록제 금융회사는 ①진·출입 자유롭고, ②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적합한 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어 他금융업 대비 영세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

○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全금융회사가 대상임에도 제도권 금융에 포함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부업 금융사는 제외

3. 개선방안

□ **등록제로 운영 중인 여전사(非카드회사)는 출연금 납부 대상 제외**

□ **출연금 요율 완화**

○ 여신전문금융사를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경우 여신전문금융사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출연요율을 인하할 필요

8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1. 현황

□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자에게 보전부담금 부과

○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자 중 구역의 복구 또는 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전부담금을 부과

* ①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② 법령 변경으로 기존 보유 대지 등이 적법하지 않게되어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보전부담금 산정방식

▶ 부담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동일지목 공시지가 평균 - 허가 대상지 공시지가) ×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 시설별 부과율 ☞ 기존 부지 내 증축 시 100% → 50% 감면('13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 시설별 보전부담금 부과율 >

대상 시설 또는 사업	부과율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7.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신축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없음	100분의 5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제24조 제2항 관련)

* 관련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동법 시행령 제36조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2. 문제점

□ 신규 투자 위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은 기존대지 내 증축은 허용되나 시설투자 추진 시 과중한 보전부담금 부과로 신규 투자 위축

- 낮은 개발제한구역 부지 지가로 공장 이전 비용 마련도 어려움

□ 안전 문제 발생 우려

○ 보전부담금으로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공장 노후화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

3. 개선방안

□ 보전부담금 부과율 완화

○ 기존 부지 안에서의 공장 등을 증축할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시설별 부과율을 면제하거나 감면

□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의 보전부담금 면제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관련 투자의 경우 보전부담금 면제 필요

9 ‘석유화학공업용’ LNG 수입부과금 환급

1. 현황

□ 석유제품 수입·판매에 부과금 징수

○ 석유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제품* 정제·수출입업자에게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

* 석유제품 : 휘발유, 등·경유 등과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 등

□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은 환급

○ 석유제품 또는 석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 중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과금 환급

* 프로필렌, 유황, 석유코크스 등 6개 제품, 그 외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2. 문제점

□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LNG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어 탄소중립* 및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 산업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비 중 1,858억원(약 20%)을 2030년까지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22.12월)

- LNG는 석유, 석탄 등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수소 생산법 중 가장 경제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어, 석유화학공업에 활용 확대 가능

* 자료: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v.59 no.2, 2021

○ 다수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탄소중립실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LNG를 수입하여 석유화학제품 등의 제조 원료로 활용 중

- LNG를 분해·연소하여 생성되는 수소(H2),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주요 석유화학제품(OXO alcohol, 우레탄중간체(TDI), 초산 등) 생산

- 기업은 CO_2 감축을 위해 LNG개질* 합성가스 생산공장을 가동하거나, 제품원료를 중유에서 LNG로 변경하는 등의 산업의 친환경 전환 진행중

* 재료 성분에서 화학 구조 형태를 재구성하여 원하는 재료를 합성·추출하는 과정

3. 개선방안

□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사용하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 기존 석유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빨리 전환시키기 위하여 LNG도 부과금 환급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

- '천연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항 추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천연가스를 분해 또는 연소하여 생성되는 수소(H2), 일산화탄소(CO)등을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조항 추가(부과금 환급 고시 제21조)

10 ‘직접 소비’ LNG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1. 현황

□ LNG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LNG 제조·판매자(수출 제외) 또는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부담금 부과(3.9원/㎥)

* 관련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2호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공업용·발전용 수입 LNG의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 수입 LNG를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발전용으로 판매하거나,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 기업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LNG는 부담금 면제 제외

* 관련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 제1항

2. 문제점

□ 기업 경쟁력 저하

○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중립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를 직접 수입·사용함에도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해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 LNG에는 60원/kg의 개별소비세, 3%의 관세, 24.2원/kg의 석유수입부과금도 부과되어 조세, 부담금 규모가 과다

□ 차별적 부담금에 따른 형평성 문제

ㅇ LNG를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부담금 부과)와 국내에서 LNG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공업용 판매) 부담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발생

ㅇ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LNG의 경우 발전용 판매 LNG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 '08.12.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3. 개선방안

□ 직접 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LNG에 대한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11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1. 현황

□ 국내선 항공유에 수입부과금 부과

○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정제·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16원/ℓ의 석유수입부과금 부과

○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는 석유제품에 항공유도 포함

- 국적항공사의 국내선 항공유 사용량은 5.5억리터로 약 80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19년 기준)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1조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국제선 항공유는 수입부과금 환급

○ 국제선 항공유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

- 국내선 항공유에는 3%의 관세가 징수, '19년 기준 약 80억원 납부

2. 문제점

□ 공익과 소비자의 이익에 반함

○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선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 전가

□ 부과금 도입 취지 상실

○ 석유수입부과금 도입 배경과 달리 부과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등에 지출을 확대

* '22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부과·부담금 수입 중 석유수입부과금이 약 83% 차지

* 석유수입부과금을 적립한 석유사업기금은 '94.12 폐지 후 타 에너지 관련 기금들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이관·통합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출 현황>

구분	회계 총 세출(억원)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세출(억원)	점유율
'21년 결산	50,963	14,434	28.3%
'22년 결산	46,197	21,459	46.5%
'23년 예산	57,704	30,841	53.4%

- 석유수입부과금은 ① 국내 에너지(석유)자원 안보, ② 에너지 이용 합리화, ③ 석유품질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3. 개선방안

□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또는 요율 인하

12 윤활기유 제조 원료 수입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

1. 현황

□ 석유제품 수입·판매에 부과금 징수

○ 석유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제품 정제·수출입업자에게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

□ '윤활기유' 제조를 위한 일부 원료용 제품은 부과금 환급

○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로 공급·사용한 경우 부과금을 환급하는데 윤활기유* 제조 원료 중 일부 제품은 수입부과금을 환급

* 원유 정제 후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하며 윤활유 완제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 원료로 석유의 윤활유 유분을 정제한 광유나 합성유를 활용하여 윤활유 제조

-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인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 제품은 미전환유(UCO), Waxy Oil, A.T.M, H.Y.C Residue, DAO, MDO, HDO 등 7가지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 /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고시 제21조 제4항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2. 문제점

□ 부과금 환급·미환급 제품 간 형평성 문제

○ 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윤활기유 제조 원료는 대상에 포함된 제조원료와 비교해 기능적 차이가 없음에도 환급에 차별

- 윤활기유 제조 원료 고시*상, 환급 대상 외 석유제품들을 투입하여 윤활유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

* KS-M-2161, 국가기술표준원(제2016-0582호)

3. 개선방안

□ 윤활기유 제조 원료 수입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

13 물이용부담금 감면

1. 현황

□ 산업용수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용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시행

* 관련 법령 :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영산·섬진강수계법 제19조 (이하 4대강 수계법)
* 소관 부처 : 환경부

○ 기업 등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때 원수비용* 외에도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 인공 처리되기 전, 자연 그대로의 물 사용시 지불하는 비용
** 4대강 수계법에 의거해 170원/톤(Ton) 납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화>

'99.8	'01.1	'03.1	'05.1	'06.1	'07.1	'08.1	'11.1
80원/톤	110원/톤	120원/톤	130원/톤	140원/톤	150원/톤	160원/톤	170원/톤

* 자료 : 2022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기획재정부, 2023.5월)

2. 문제점

□ 첨단 산업 경쟁력 저하

○ 경쟁관계인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하지 않아*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 자료: OECD 국가 물부담금 현황 보고서, 2019

□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물이용부담금은 원수비용 대비 74% 수준으로 과도한 수준*

* 원수비용: 230원/톤, 물이용부담금: 170원/톤

3. 개선방안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감면대상 확대

* '22년 8월, 국가안보 및 경제차원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

14 방제분담금 부과 대상 축소

1. 현황

□ 유류 운송 선박 및 저장시설에 방제분담금 부과

○ 배치의무자*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등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의 방제를 위하여 방제분담금 납부

* 배치의무자 : 방제선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한 경우 임차인)

○ 분담금 부과대상은 경유 및 법(유류오염배상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과 유류 저장시설

- 관련 법령은 분담금 대상으로 비지속성 유류*에서는 경유만 명시

* 비지속성 유류 : 경질유에 속하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의미

*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유류오염배상법 제2조 제5호/동법 시행령 별표9

* 소관 부처 : 해양수산부

2. 문제점

□ 분담금 부과 근거 부족

○ 경유는 해양으로 유출되더라도 별도로 방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제분담금을 부과해야 할 이유가 없음

- 경유는 비지속성 유류이기 때문에 유출사고 등으로 해양에 유출되더라도 대부분 자연 증발하여 별도의 방제가 불필요

□ 글로벌 스탠더드와 불일치

ㅇ 국제협약으로 운영되는 IOPC Funds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분담금 납부 대상에서도 '경유' 제외

* IOPC Funds : 국제해사기구 IMO 산하로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전세계 주요 정유사와 관련 회사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140여 개국 가입)

3. 개선방안

□ 방제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경유' 제외

15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조정범위 축소

1. 현황

□ 지자체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가능

○ 지자체장은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기준치의 0.5배~2배에서 조정 가능(조례 개정 통해 조정)

*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37조 2항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지자체

□ 서울시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최대치로 조정

○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에 대한 도로교통촉진법상 '교통유발계수'를 최대치(2배)로 상향

* 대규모 점포 교통유발계수 : 5.46(도시교통정비촉진법), 10.92(서울시)

2. 문제점

□ 부담금 부과 근거 완화

○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대규모점포 내방고객수가 감소하면서, 대규모점포의 교통유발효과는 실질적으로 낮아짐

○ 서울 시내 주요 대규모점포들이 위치한 남대문로, 소공로, 압구정로의 경우 연도별 차량통행 속도가 최근 8년간 증가세

- '20년부터는 3개 도로 평균 차량통행 속도가 서울 도심 평균속도 추월

<연도별 서울시내 차량통행속도 변화('14～'22)>

도로명	방향	측정년도 (단위: km/h)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남대문로	북→남	12.6	13.3	16.1	17.3	17.6	18.3	22.2	21.1	20.2
소공로	북→남	15.0	15.5	15.8	17.0	16.8	18.7	22.5	23.5	23.3
압구정로	동→서	16.1	16.6	20.1	20.7	20.6	20.7	20.8	20.0	19.8
도심 평균	-	17.4	17.9	19	19	18.3	18.5	20.5	19.7	19.2
단위부담금 (㎡ / 원)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00	2000

* 자료: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연간 통행속도 보고서('22)·서울시 교통량 조사자료

□ 시설물 간 형평성에 문제

○ '22년 기준 대규모점포 인근 도로의 통행속도가 도심 평균속도 보다 높은데 '대규모점포'의 계수가 최대치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서울시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최대치(100분의 100 : 2배)로 상향한 곳은 '대규모점포'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외에는 없음

- 대규모점포의 경우,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하여 부과금이 4배로 증액되며 기업의 부담이 가중

3. 개선방안

□ 산정기준 범위 축소

○ 조정 가능한 교통유발계수의 상한선 범위를 하한선과 같은 50% 범위로 축소 (기존 : 100% → 개선 : 50%)

16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개선

1. 현황

□ 오염물질 배출에 부과금 부과

○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게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징수

* 관련 법령 : 환경오염시설법 제15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 소관 부처 : 환경부

'기본' 배출부과금 계산방식

1. 대기환경보전법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농도별 부과계수

2. 환경오염시설법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농도별 부과계수×사업장별 부과계수

'초과' 배출부과금(or 과징금) 계산방식

1. 대기환경보전법

Ⓐ 오염개선계획서* 제출 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

Ⓑ 오염개선계획서 미제출 시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 환경오염시설법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정액부과금

□ 일정 기준 충족 시 배출부과금 면제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환경오염시설법상 최대배출기준의 30% 미만일 경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부과금 면제를 위한 농도별 부과계수('22.1.1~) >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 자료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 5

2. 문제점

□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 실무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 때문에 산업계 부담 가중

-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인 경우 30%미만인 81ppm 미만이 부과금 면제이나 최적가용기법* 기준 81ppm 미만은 현실적 달성 불가능

* 배출·방지시설의 설계/설치/운영/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

3. 개선방안

□ 대기배출 시설별 부과금 면제 '농도별 부과계수' 완화

□ 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을 검토하여 유동적으로 기준 변경

○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 비중 변화에 따라 배출부과금 대상의 농도별 부과계수와 부과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

17 중복규제에 따른 대기 배출 적용 기준 완화

1. 현황

□ 오염물질 배출에 부과금 부과

○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게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징수

* 관련 법령 : 환경오염시설법 제15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 소관 부처 : 환경부

'기본' 배출부과금 계산방식

1. 대기환경보전법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농도별 부과계수

2. 환경오염시설법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농도별 부과계수×사업장별 부과계수

'초과' 배출부과금(or 과징금) 계산방식

1. 대기환경보전법

Ⓐ 오염개선계획서* 제출 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

Ⓑ 오염개선계획서 미제출 시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액 후 징수)

▶ 총량초과과징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3. 환경오염시설법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정액부과금

<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

사업장 종류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 80톤 이상	연 20톤 이상 80톤 미만	연 10톤 이상 20톤 미만

□ 일정 기준 이상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

❶ **(농도규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1,2종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대비 강한 허가배출기준 적용(환경오염시설법)

* 3종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 통합환경허가 취득 시 '허가배출기준' 설정 필요(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 '허가배출기준'은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삼아 배출영향 분석*을 통해 한계배출기준**의 최대 70%(엄격한 한계배출기준)까지 적용

* 배출구에서 최대배출기준(농도)로 배출했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델링 분석

** 한계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의 60%(먼지), 80%(이산화황), 85%(이산화질소), 67%(기타 오염물질) 수준으로 적용

- 배출허용기준은 '20년부터 최대 67% 강화*되어 적용

* 자료: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환경부)

❷ **(총량관리)** '20년부터 연간 질소산화물(NOx) 4톤, 황산화물(SOx) 4톤, 먼지 0.2톤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자*로 지정(대기관리권역법)

* 3종 사업장만 대기관리권역법 제19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완화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상 총량관리대상이 배출기준을 넘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

*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1항)

-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서 1,2종 사업장이 초과배출부과금 특례에서 제외(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의 130%로 완화 적용)

* 관련 법령 :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 / 대기관리권역법 제19조, 제23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 소관 부처 : 환경부

< 대기 배출부담금 적용 기준 >

구분	적용법률	규제기준	대상
대기 기본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총량관리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환경오염시설법	총량관리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대기 초과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총량관리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외 7개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시설법	농도규제	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기타 오염물질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 9,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2. 문제점

□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농도·총량을 중복으로 규제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1·2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❶ '농도규제' 및 ❷ '총량관리'를 모두 받는 중복규제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91) ☞ 환경오염시설법('17) ☞ 대기관리권역법('20) 순으로 규제 증가

- 국내 등록된 917개 사업장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1·2종 사업장에 해당 (1종 사업장은 83%, 2종은 13%, 총 96%*를 차지)

* 자료 : TMS 측정결과 공개(한국환경공단)

○ ❶환경오염시설법 최대배출기준이 낮아질수록 초과배출부과금 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증가하거나, ❷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대상 확대

□ 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 가중 우려

○ '25년부터 통합환경허가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될 예정으로 1,2종 사업장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우려

- '25년부터 최대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다수의 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적용대상 확대

- 허가배출기준이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시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됨

- 현재 1·2종 사업장은 대부분의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적용하고 있어 불가피한 상황* 제외 시 허가배출기준 초과 사례 거의 없음

* 일시적 설비 이상, 배출/방지시설 가동정지 및 재가동 등
* 대부분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운전상황 변동에 의한 일시적 고농도 배출 및 설비 보수를 위한 가동 중지/재가동 시 배출 상황에서 발생

□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

○ 규제가 강하지 않은 3종 사업장은 초과배출부과금 특례를 받고 있지만, 1,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

3. 개선방안

□ 총량관리/통합허가 동시 적용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 일부 우수 배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기준 대비 20~3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지원방안 마련

* '15년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시 제안된 인센티브

- 현재 1·2종 사업장 중 우수시설은 대부분 허가배출기준 50% 이하 수준으로 배출하고, 총량제 시행 이후 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벌 없음

□ 배출 기준 완화

○ 통합환경허가 및 총량관리 동시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허가배출기준이 아닌 최대배출기준으로 변경

18 장애인 고용부담금 업종별 적용

1. 현황

□ 일정 기준 이하로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해야 하는 인원에서 부족한 인원 만큼에 비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1000분의 31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11,220원	1,484,400원	1,731,800원	2,060,740원

* 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제3항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1호)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직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소관 부처 : 고용부

2. 문제점

□ 업종을 고려하지 않아 기업에 큰 부담

○ 업종, 작업 환경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상당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업종에 따라 근로자의 다수가 기술직/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연구직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전문지식 등이 필요하나 연구/기술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절대적 숫자는 부족

*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에 불과(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22.8월)
* 서울대의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은 매년 18명으로 입학생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한데, 매년 합격인원은 4~7명으로 정원의 30% 정도 수준

○ 신체를 많이 쓰는 업종의 경우 장애인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

3. 개선방안

□ 산업별, 업종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율 차등 적용

□ 장애인 고용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기업이 장애인 관련 단체/교육기관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경우 장애인을 채용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신설